
해커스패스

전산세무 2급

이론+실기+기출문제

세법 개정자료

2015년 교재 출간 후 2016년 1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수정 및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2015년 최신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2016 개정세법 완벽반영

<해커스패스 전산세무 2급 이론+실기+기출문제(2015년 최신판)> 세법 개정 자료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사항을 토대로, 해커스 전산세무 2급 교재에 수정 되어야할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2015년 최신판 <해커스패스 전산세무 2급 이론+실기+기출문제>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2016년 전산세무 2급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6.01.22 업데이트)

Page	위치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본문 개정 반영 사항				
420	(4)	수정	법인 : 30% , 개인 : 40~60%	법인 : 35% , 개인 : 40~60%
421	중간	수정	(참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급시기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 · 공급시기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발급받은 경우 : ~	(참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급시기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은 경우 : ~ · 공급시기 이후이면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급받은 경우 : ~
423	하단	수정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법인은 불가)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법인과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불가)
424	상단	삭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법인은 불가) $\text{공제액} = \text{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times 200\text{원}$	삭제
487	하단 표	수정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사업자(법인제외)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법적증빙을 발행하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급사업자(법인과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이거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법적증빙을 발행하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487	하단 표	추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다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 세액공제액 = $\text{Min}[\text{㉠}, \text{㉡}]$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다면 다음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 세액공제액 = $\text{Min}[\text{㉠}, \text{㉡}]$

			㉠ 전자세금계간서 발급건수 × 200원 ㉡ 한도 : 연간 100만원	㉠ 전자세금계간서 발급건수 × 200원 ㉡ 한도 : 연간 100만원 • 2015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만 적용한다.
520	하단 box	수정	1) 법인 : 30% , 개인 : 40~60%	1) 법인 : 35% , 개인 : 40~60%
524	㉡	수정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가액 × 5/105) + (중고자동차 매입가액 × 9/109)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가액 × 3/103) + (중고자동차 매입가액 × 9/109)
573	(2)	수정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전액 비과세)과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연 2,000만원 비과세)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전액 비과세)과 축산 이외의 농가부업소득(연 3,000만원 비과세)
605	중간	추가	① 공제대상자와 공제요건 (표에서) 연간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100만원 이하	① 공제대상자와 공제요건 (표에서) 연간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100만원 이하 (*1) (*1)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까지 인정된다.
608	표	수정	(소득공제액에서) ㉠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 : (신용카드 사용분×15%) + (현금영수증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증가분× 10%)(*1) (*1) 2015년 상반기 의 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이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 를 추가로 공제한다.	(소득공제액에서) ㉠ 공제가능금액의 합계액 : (신용카드 사용분×15%) + (현금영수증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증가분× 20%)(*1) (*1) 2016년 상반기 의 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이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 를 추가로 공제한다.
610	㉤	수정	㉠ 공제대상기부금 ×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 공제대상기부금 × 15%(2,000만원 초과분은 30%)
별책부록 개정 반영 사항				
별책부록-연말정산필수암기노트 26	중간	추가	② 소득금액 요건의 판단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② 소득금액 요건의 판단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 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까지 인정된다.
별책부록-연말정산필수암기노트 33	하단	수정	(실기포인트) ~ ·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를 사용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문제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기포인트) ~ ·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보다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를 사용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문제에 관련내용이 있다면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참고] 2016년 세법 개정사항

* 출처 : 기획재정부

위 '해커스패스 전산세무 2급 세법 개정 자료'에 반영된 2016년 세법 개정안 원문입니다.

구분	종 전	개정 후	비고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가산세는 부과)	<input type="checkbox"/> 수취기한 연장 ○ (좌 동) ○ 예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가산세는 부과) * 제1기(1~6월):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input type="checkbox"/>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16년말까지 한시 적용)	<개정이유>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46조)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소매·음식·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 공제율: 1.0%('16말까지 1.3%) *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16말까지 2.6%) ○ 공제한도: 연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조정 ○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부가가치세법 제47조)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건당 200원) ○ 적용기한: '1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 종료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등 감안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특례기한 종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소득세 시행령 제9조)	<input type="checkbox"/> 농가부업소득 범위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과 그 이외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말한다.	<input type="checkbox"/> 농가부업소득 범위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과 그 이외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이유> 한·중 FTA 후속조치

<p>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p>	<p><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p> <p>※ 총급여 333만원 × (1 - 근로소득공제 70%)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p>	<p><input type="checkbox"/>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p><개정이유> 소득세 세부담 경감</p> <p><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p>
<p>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한도: 300만원(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16.12.31. 	<p><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율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좌 동)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50%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좌 동) (좌 동) 	<p><개정이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p> <p><적용시기> '1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p>
<p>고객기부금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법 제59조의 4)</p>	<p><input type="checkbox"/> 고객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고객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p><input type="checkbox"/> 고객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천만원 → 2천만원 25% → 30% 	<p><개정이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p>